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848

제출연월일 : 2020. 10.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노사평화의 전당이 건립('21.4월)됨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명칭과 소재지에 '노사평화의 전당'을 추가함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나. 관계법령 :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(※ 붙임)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마. 기타사항
1) 입법예고
가) 예고기간 : 2020. 9. 21. ~ 10. 12.(21일간)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아님
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4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5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

명 칭	소 재 지
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(호산동)
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87(성당동)
대구광역시 서대구복지회관	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24(중리동)
대구광역시 성서복지회관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(갈산동)
노사평화의 전당	대구광역시 구지면 응암리 1266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제2조(명칭과 소재지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
<table>
<tr><th>명 칭</th><th>소 재 지</th></tr>
<tr><td>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 복지관</td><td>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(호산동)</td></tr>
<tr><td>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</td><td>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87(성당동)</td></tr>
<tr><td>대구광역시 서대구복지 회관</td><td>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24(중리동)</td></tr>
<tr><td>대구광역시 성서복지회관</td><td>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(갈산동)</td></tr>
</table></td><td>제2조(명칭과 소재지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
<table>
<tr><th>명 칭</th><th>소 재 지</th></tr>
<tr><td>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 복지관</td><td>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(호산동)</td></tr>
<tr><td>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</td><td>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87(성당동)</td></tr>
<tr><td>대구광역시 서대구복지 회관</td><td>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24(중리동)</td></tr>
<tr><td>대구광역시 성서복지회관</td><td>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(갈산동)</td></tr>
<tr><td>노사평화의 전당</td><td>대구광역시 구지면 응암리 1266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관 계 법 령

□ 근로복지기본법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 ·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 · 노동조합(지부 · 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·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· 사업주 · 노동조합 ·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'노사평화의 전당'이 건립됨에 따라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일자리투자국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권오상